
지식재산공제 자산운용지침(안)

(Investment Policy Statement)

2024. 2.



목 차



1. 개요	1
2. 자산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2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2
4. 자산운용체계	3
5. 자금수지 계획	6
6.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7
7. 자산배분 정책	8
8.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10
9. 위험관리 정책	12
10. 성과평가	14
11. 감사 및 공시	16
12. 의결권 행사	16
13.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17

1-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

- ☐ 「지식재산공제 자산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이하 “지식재산공제사업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15조 및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업무방](#)
[법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공제(이하 “공제”라 한다)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에 관하여 규정한다.
- ☐ 본 지침은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에서 작성하고, 「지식재산공제자산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식재산공제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 ☐ 본 지침은 공제자산운용과 관련된 모든 조직 및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 ☐ 본 지침에서 ‘자산’이라 함은 공제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서 예치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을 말한다.

1-2. 「자산운용지침」의 목적

- ☐ 본 지침은 자산운용과 관련된 내부관리자 및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제자산의 운용원칙 및 방향을 전달함으로써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본 지침은 「국가재정법」을 준수하면서 공제의 자산운용·관리에 적합한 투자정책, 투자목표, 투자지침, 성과평가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

1-3. 공제의 개요

- 공제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대응, 해외 출원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기술보호 및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발명진흥법」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6과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3, 28조의4, 28조의5, 28조의6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이다.
- 공제자산의 주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및 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이다.

2 자산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 공제의 자산운용은 「발명진흥법」 및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제정한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 목적

- 공제의 자산운용은 법령에 의거 공제가입기업의 공제 관련 대출금 확보 등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지원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원을 관리·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2. 자산운용 원칙

- 공제의 자산운용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을 수행함에 있어 공제자산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적정 유동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제 대출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하며,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운용수익률 제고에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 자산운용 의사결정체계

- 자산운용은 자산운용계획에 의거 지식재산공제부가 자율과 책임에 입각하여 수행하며, 주요사항은 「지식재산공제자산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지식재산공제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한다.



4-2. 자산운용 조직과 역할

- 지식재산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
- 공제운영위원회는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공제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제운영계획안의 수립·변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지식재산공제자산운용규정», 「지식재산공제자산운용지침(IPS)」의 제정 및 주요내용의 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지식재산공제자산운용관리위원회(이하 “공제자산운용관리위원회”라 한다.)

- 자금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공제자산운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지식재산공제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연간공제자산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목표수익률과 기준수익률의 설정·조정에 관한 사항
 -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 외부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위험관리정책, 위험한도설정, 관리, 측정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제자산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공제자산운용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 공제자산운용관리위원회의 외부전문가는 자산운용, 재무, 금융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해상충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공제자산운용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게 하되, 그 결과를 위원장과 자산운용관리위원들에게 보고한다.
- 공제자산운용관리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지식재산공제부

- 지식재산공제부 자산운용 담당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월별 자금수지계획 등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 여유자금의 관리 및 운용
 - 거래 금융기관 선정 및 투자가능 상품 기획
 - 「지식재산공제자산운용관리위원회」의 운영
 - 기타 공제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사항
-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 및 평가결과를 공제자산운용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총 허용위험한도 준수 여부 모니터링
 - 운용수익률 분석 및 보고
 - 기타 공제자산의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사항

5-1. 자금수지 항목

- ☐ 자금 유출입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금수지 항목을 수입과 지출항목으로 구분하고 수입·지출의 규모, 시기, 속성 등을 분석하여 각 항목의 특성에 맞는 예측 방법을 결정한 후 미래에 발생할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의 규모와 시기를 산정한다.
- ☐ 자금수지상의 수입 항목은 출연금, 공제부금, 공제자산운용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항목은 해지환급금, 대출금, 부금이자, 사업 및 관리비 등으로 구성된다.

5-2. 운용자산의 분류

- ☐ 공제의 운용자산은 다음과 같이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으로 구분된다.

구 분		내 용
단기자산	현금성자산	•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 • 만기 3개월 미만의 자산
	유동성자산	• 유동성을 일부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자산 • 만기 3개월 이상~1년 이하의 자산
중장기자산		• 자산운용 수익의 제고를 위해 만기 1년 이상 운용 가능한 자산

5-3.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 규모 결정

- ☐ 전년도 말 보유 자산규모와 당해연도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규모를 합산하여 총 운용가능 자금규모를 도출한 후, 자금운용 계획을 바탕으로 당해연도 단기자산 및 중장기자산의 규모를 결정한다.

6-1. 목표수익률

- ☐ 목표수익률은 공제 사업운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산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적절한 수준의 수익률로 책정되어야 하며, 예상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재정안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여 연간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한다.
- ☐ 목표수익률은 장기 재정추계에 근거한 자산부채종합관리(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를 기반으로 재정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공제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공제 조달비용(연간 공제이율)+사업비용+리스크 대응 비용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 공제 조달비용 : 공제가 지급해야 하는 공제 부금이율
 - * 사업비용 : 초기사업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 * 리스크 대응 비용률: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비한 자기자본 수익률

6-2. 허용위험한도

- ☐ 허용위험한도는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에 대한 수용 가능성 정도를 의미하며, 허용위험한도는 Shortfall Risk를 통해 설정하고 자산배분 도출 시 제약조건으로 활용한다.

7-1. 자산배분의 원칙

- ☐ 공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기초로 자산배분을 실행한다.
- ☐ 자산배분안은 지속 가능한 공제사업 영위를 위하여, 중장기 재정 추계 및 공제의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자산별 기대수익률, 위험(표준편차), 상관관계를 기초로 위험 대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출한다.

7-2. 자산군 분류

- ☐ 자산배분은 자산군(Asset Class)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자산군은 관련 법령, 수익률과 위험 간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 ☐ 공제의 자산군은 분산가능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여 예치금,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대체투자 및 단기자산으로 분류한다.

7-3. 전략적 자산배분

- ☐ 전략적 자산배분(SAA: Strategic Asset Allocation)은 자산배분 모형을 통해 도출된 자산배분 대안 중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자산군별 자산배분 비중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중장기 공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수지전망을 통해 운용가능한 자산 예측과 상품별 운용비중 등을 반영하여 허용된 위험수준 내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배분안을 설정한다.
- ☐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SAA)은 시장상황과 운용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자산운용정책 수립 시 재설정할 수 있다.

- ☐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SAA)은 공제자산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은 연간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한다.

7-4. 전술적 자산배분

- ☐ 전술적 자산배분(TAA : Tactical Asset Allocation)은 시장상황과 운영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산배분 비중 변동 허용범위 내에서 자산군별 배분비중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전술적 자산배분은 전략적 자산배분의 이행 자산배분안을 기준으로 연간 자금운용계획 및 월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 ☐ 자산군별 비중 변동 허용범위는 전략적 자산배분의 연도별 이행 자산배분 비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산배분 비중의 허용 변동치 한도를 말한다.
- ☐ 허용범위는 각 자산군의 변동성 및 허용위험한도, 운용인력의 전문성 등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 ☐ 자산군별 자산배분 허용범위는 연간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한다.

7-5. 자산배분의 조정

- ☐ 연초 설정한 자산배분의 조정은 금융시장 상황 변화 대응, 유동성 확보 등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자산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과 조정 결과는 공제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 자산배분안에 대한 검증은 매년 실시하며, 금융환경변화 등 제반 조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 재조정한다.
- ☐ 자산의 재배분시에는 수익률 정도, 시장전망,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8-1.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정책

- ☐ 공제의 자산운용은 내부 전담인력을 통한 직접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자금의 일부를 외부 자산 운용사나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연기금투자폴 등에 위탁 운용할 수 있다.
- ☐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은 내부 인력의 전문성, 여유자금의 규모 및 투자대상 상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제자산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한다.
- ☐ 공제가 투자한 연기금투자폴 상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선정기준에 의해 관리 되고 있으므로 연기금투자폴 위탁관리정책에 따른다.

8-2. 외부위탁투자 기관

- ☐ 외부위탁운용사는 다음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연기금투자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무 및 투자자문업자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등
- ☐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 지식재산공제부는 운용사, 수탁사 및 평가사의 보고내용, 위탁상품의 투자내역, 수익률, 운용사 및 펀드매니저 동향 등에 관해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 ☐ 지식재산공제부는 운용사의 위탁운용계약 준수여부 및 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 평가하여 해당 운용사에 위탁운용을 지속할 것인지 결정한다.

8-3. 재투자기준

(1) 만기도래자금 투자원칙

- ☐ 만기도래자금 운용은 사업비 부족자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외 잉여자금 발생 시 중장기자산으로의 운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재투자 시 고려사항

- ☐ 재투자는 상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단기자산은 예비 유동성 확보자금의 성격을 가짐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유동성부문의 평가이다.
- ☐ 거래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기관별·상품별·만기별 분산 재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 ☐ 상품별 운용기한, 조기환매 가능여부 및 수수료, 예상기대수익률, 금융기관별 예치비중,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투자상품의 자산가치 손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9-1. 위험종류별 정의 및 관리 정책

□ 시장위험

- 정의 : 시장위험은 주가, 금리, 환율 등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유한 운용자산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 관리방법 : 시장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월간 단위로 95% 신뢰 수준의 Market VaR를 계산하여 측정·관리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신용위험

- 정의 : 신용위험은 거래 금융기관 또는 채권 발행기관의 부도로 인한 손실(default loss) 위험과 더불어 신용등급의 하락에 따른 손실(devaluation loss) 위험을 의미한다.
- 관리방법
 -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정부보증채권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치금은 장부가격으로, 시가변동 상품은 시가평가액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 신용위험 관리대상 자산에 대해 신용등급 변동 및 신용등급별 비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유동성위험

- 정의 : 유동성위험은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지급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시장의 거래 부진 등으로 정상 가격에 매매하지 못함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한다.
- 관리방법 : 일시적인 자금부족 시에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상품 또는 유가증권을 매도하여 이를 해소한다.

□ 운영위험

- 정의 : 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제도나 업무처리 절차, 시스템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실이 초래될 위험을 의미한다.
- 관리방법 : 공제사업 감독규정 제7조에 의한 내부통제기준과 기금의 제 규정이 정하는 절차 및 내용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한다.

9-2. 연기금투자물에 관한 예외조항

- 연기금투자물은 자체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위험관리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금이 투자한 연기금투자물 상품의 위험관리는 연기금투자물 위험관리 정책에 따른다.

10-1. 성과평가의 원칙

- 성과평가는 공제자산의 운용성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신뢰를 확보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자산운용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성과평가는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시에 설정한 운용기간별, 운용상품별 기준 포트폴리오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성과평가를 위하여 적절한 벤치마크 지수를 적용하며,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하여야 한다.
- 공제자산 운영주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성과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0-2. 성과평가 주기

- 성과평가는 자산운용의 실적을 기준으로 반기, 연간으로 수행한다.

10-3. 성과평가 보고

- 성과평가의 결과는 공제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4. 성과평가 기준

- 성과평가에 사용되는 수익률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시간가중 수익률, 평균잔액 수익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자산별 성과평가 기준수익률은 투자자산을 대표하는 시장수익률로 설정하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과평가 기준수익률은 자산군별 투자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자산군별 성과평가 기준수익률>

투자자산			기준수익률	제공기관
단기자산	확정형	현금성 (3개월 이내)	MMDA 수익률	한국은행
		유동성 (3개월 이상 1년 미만)	정기예금 6개월~1년 미만 평균금리	
	실적형	현금성 (3개월 이내)	MMF 업계평균 수익률	연기금 투자폴
		위탁운용	자산구성을 감안한 벤치마크지수 ^{주1)}	
중장기 자산 (1년 이상)	확정형		정기예금 1년~2년 평균금리	한국은행
	위탁운용		자산구성을 감안한 벤치마크지수 ^{주1)}	연기금 투자폴

주) 1. 연기금투자폴은 주간운용사에서 정한 바에 따름

11 감사 및 공시

11-1. 감사

- 공제의 감사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의 「감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11-2. 공시

-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년도 3월말까지 자산운용 주요 결과를 홈페이지(<https://ipmas.or.kr>)에 공시한다.

12 의결권 행사

- 공제는 직접 또는 일임자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공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함에 있어 공제의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신의에 따라 신중하고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13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 자산운용담당자는 공제자산의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해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자산운용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자산운용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산운용담당자는 전문역량을 유지·제고하고, 투자 관련 의사결정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
 - 자산운용담당자는 기금의 「기술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서 정한 직무윤리 및 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했을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
 - 자산운용담당자는 상기 행위준칙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붙임 “행위준칙 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행위준칙 준수서약서

본인은「자산운용담당자 행위준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아울러 행위준칙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새로운 사항이 자산운용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에는 본 서약서 외에 별도의 새로운 추가 서약 없이 이를 준수한다. 만약 행위준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따라 처리된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1. 본인은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기금의 이익을 우선으로 행동한다.
2. 자산운용담당자 본인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금의 「임직원 행동강령」 및 「임직원 윤리강령」을 따른다.
3. 본인은 자금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밀정보를 누설하거나 자금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 . .

소속 :

성명 :

(서명)